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신자 수신자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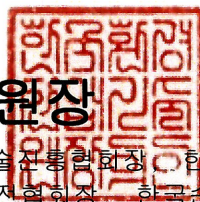
(경유)

제목 **한-중 환경기술 실증지원센터 중국 국가공인성적서 발급서비스 활용 및 홍보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원에서는 중국환경과학연구원과 공동으로 “**한-중 공동 환경기술 실증 지원센터(중국 북경)**”를 설립, 본격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국내 기업 대상으로 **한-중 공동 시험분석 및 중국 국가공인 성적서 발급 서비스**를 시작하오니,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귀 기관 회원사 또는 귀 기관 지원사업 참여기업이 해당 서비스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4. 더불어, 각 종 사업 추진시 중국 국가공인 성적서가 필요한 **중국진출 한국 제조업, 환경기업 또는 연구기관** 등이 실증지원센터 서비스를 활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한-중 실증지원센터 중국 국가공인 성적서 발급 서비스 이용 안내 1부. 끝.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수신자 대한상공회의소회장, 한국무역협회장,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장, 한국환경산업협회장, 환경보건협회장,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이사장,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회장

시행 해외사업2실-974 (2015. 10. 13.) 접수 ()

우 122-706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 http://www.keiti.re.kr

전화 /전송 / 공개

* 업무처리사항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업무담당부서에 전화 또는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업무관련 비위사실 신고: 감사실(전화:02-380-0691), 인터넷: 기술원 홈페이지-고객센터-신고센터(클릭)

국내 우수 환경기술의 중국 현지 실증화 지원을 위한 한-중 공동 환경기술 실증지원센터 운영,

중국 현지 환경시료 시험분석 중국 국가공인 성적서(CMA인증) 서비스 개시 안내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중국 최대 환경표준제정 및 환경기술연구기관인 중국환경과학연구원과 공동으로 국내 우수 환경기술의 현지 실증화 지원을 통한 중국내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한-중 공동 환경기술 실증지원센터(중국 베이징)”를 설립 하여, 본격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국내 기업의 중국 현지발생 환경시료에 대한 한-중 공동 시험분석 및 중국 국가공인 성적서(CMA인증) 발급 서비스를 시작하오니, 현장발생 환경시료에 대한 객관적, 중국 국가급 공신력 데이터를 요하는 한국 제조업 및 환경기업, 유관기관 등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한-중 공동 환경시료 시험분석 '중국 국가공인 성적서 발급' 개요

- **내용** : 중국 환경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환경기술의 현지 성능검증이 필요 함에 따라 발생 환경시료에 대해 현지 시험분석 및 중국 국가공인 성적서 (CMA*인증) 제공
* CMA ; China metrology Accreditation, 중국 국가검험총국 주관 중국계량인증체제
- **운영체계** : 실증지원센터와 중국환경과학원 “CMA인증실험실”의 한-중 공동 시험분석 및 중국 국가공인 시험성적서 발급 업무 분담, 상호 공조체제 구축
- **분석대상** : 수질 126항목, 토양·침전물 및 고체폐기물 115항목, 생물 11항목 및 화학품 2항목 등 총 5분야 253항목 * 붙임1. 분석항목 및 단가기준 참고
- **분석인증** : 기업 요구에 따라 CMA, CNAL, GLP인증 획득 가능
* CMA(중국계량인증), CNAL(중국실험실인가(국제표준)), GLP(독성시험 인가)
- **문의 및 접수처**
 - 명칭 : 한-중 공동 환경기술 실증지원센터 (中韩共同环境技术实验室)
 - 주소 : 중국 북경시 조양구 대양방 8호 중국환경과학연구원 1동 북측
中国 北京市 朝阳区 大羊坊 8号 中国环境科学研究院1号办公楼 北侧
 - 문의 : (북경)+86-10-8491-4200 (서울)+82-2-380-2989 (고광진 센터장, 임보람, 송호양)
 - 이메일 : jincorea@keiti.re.kr boramst@keiti.re.kr / songhaoyang@keiti.re.kr

**한-중 공동 환경기술 실증지원센터 운영
중국 현지 환경시료 시험분석
중국 국가공인 성적서(CMA인증) 발급 서비스' 안내**

1. 한-중 환경기술 실증지원센터 개요

□ 사업목적

- 환경산업 등 신성장 산업의 중국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 우수 환경기술에 대한 한-중 공동 실증협력 및 공인 실증체계 구축을 통해 중국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양국의 환경기술 발전에 기여

□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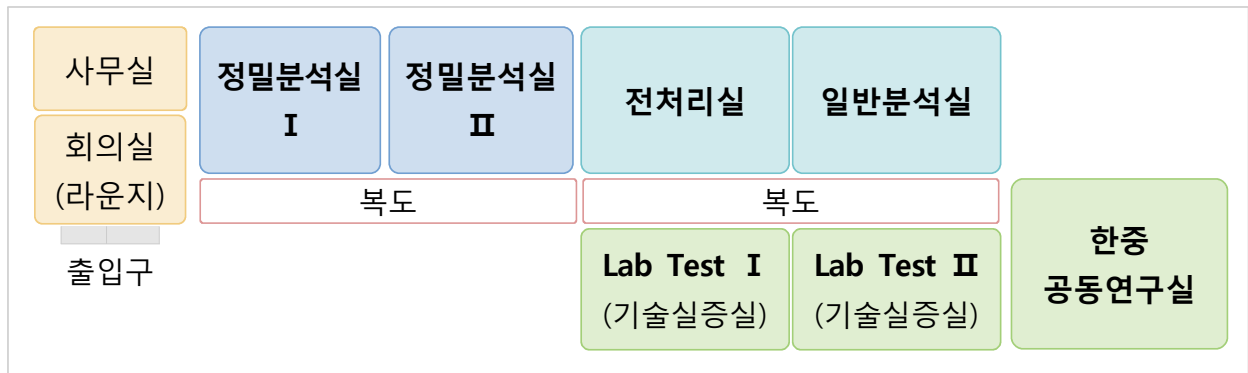
- 중국 환경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환경기술에 대해 현지 성능 검증이 필요함에 따라 중국 국가기관이 발행하는 공인 성능검증서 발급을 지원하여 기술 신뢰성 확보
 - * 국내 기업이 중국 국가기관이 발행한 기술성능 검증 공인자료 획득은 어려움
- 한-중 FTA 체결 등 관세장벽이 철폐되는 대신 증가하는 기술무역장벽(기술표준, 적합성평가, 인증 등)에 대한 국내기업의 애로 지원

□ 주요기능

- (시험분석) 국내 기업의 중국 현지발생 환경시료에 대한 한-중 공동 시험분석 및 중국 국가공인 시험성적서 발급
- (환경기술 실증) 국내 환경기술을 중국 현지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성능·신뢰성 등에 대해 중국환경과학연구원과 공동으로 Lab Test 실증 진행(2개소)
- (기업참여) 중국 진출 유망기술 보유 국내 중소환경기업 참여, 실증지원센터를 거점으로 한-중 공동 실증연구 촉진 및 중국 진출 기반 구축

□ 구축현황

- (위치) 중국 북경시 조양구 대양방 8호 중국환경과학연구원 1동 북측
中国 北京市 朝阳区 大羊坊 8号 中国环境科学研究院1号办公楼 北侧
- (운영 인프라) 일반분석(2), 전처리(1), 정밀분석(1), Lab Test 실증 실험실(2), 한-중 공동연구실(1)



○ (분석 인프라) 정밀분석 장비(ICP등 4종), 일반분석 장비(pH미터 등 16종) 도입·구축 완료

- * 실증지원센터 및 중국환경과학원 양기관 분석인프라 상호 활용을 통한 한·중 공동 시험분석 및 중국 국가공인 시험성적서 발급

□ 기대효과

- 국내 환경기업의 중국 현지 실증화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구축함에 따라 기업 활용도 증진
- 국내 환경기업 대상 중국 현지 공인시험성적서 발급 체계 구축에 따라 중국 현지 사업화 가능성 및 접근성 증대

II. 환경시료 시험분석 '중국 국가 공인성적서(CMA인증) 발급' 개요

1. 운영개요

- (목적) 중국 환경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환경기술의 현지 성능 검증이 필요함에 따라 발생 환경시료에 대해 현지 시험분석 및 중국 국가공인 성적서(CMA*인증) 제공

* CMA ; China metrology Accreditation, 중국 국가검험총국 주관 중국계량인증체제

- (필요성) 그간 국내 기업의 중국 기술성능검증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국내 환경기술의 중국 진출기반 강화 및 신뢰성 확보

* 지역별 시료 중복검증 요구, 시간적·비용적 문제 등 무역기술장벽 해결 필요

2. 운영방안

- (운영체계) 실증지원센터와 중국환경과학원 “CMA인증실험실”*의 한·중 공동 시험분석 및 중국 국가공인 시험성적서 발급 업무 분담, 상호 공조체제 구축

* 중국 국가 환경보호 화학품 생태효응 및 위험평가 중점실험실 : 중국 환경보호부 3대 중점 실험실 중 하나, 국가검험총국이 인정한 전문 시험분석기관

- 실증지원센터 : 고객지원(시험문의, 상담, 접수, 공동분석 및 결과통보)
- 중국환경과학원 CMA 실험실 : 공동분석 및 시험성적서 발급



- (분석대상) 수질 126항목, 토양·침전물 및 고체폐기물 115항목, 생물 11항목 및 화학품 2항목 등 총 5분야 253항목

* 붙임 1. 시험분석 상세목록 및 단가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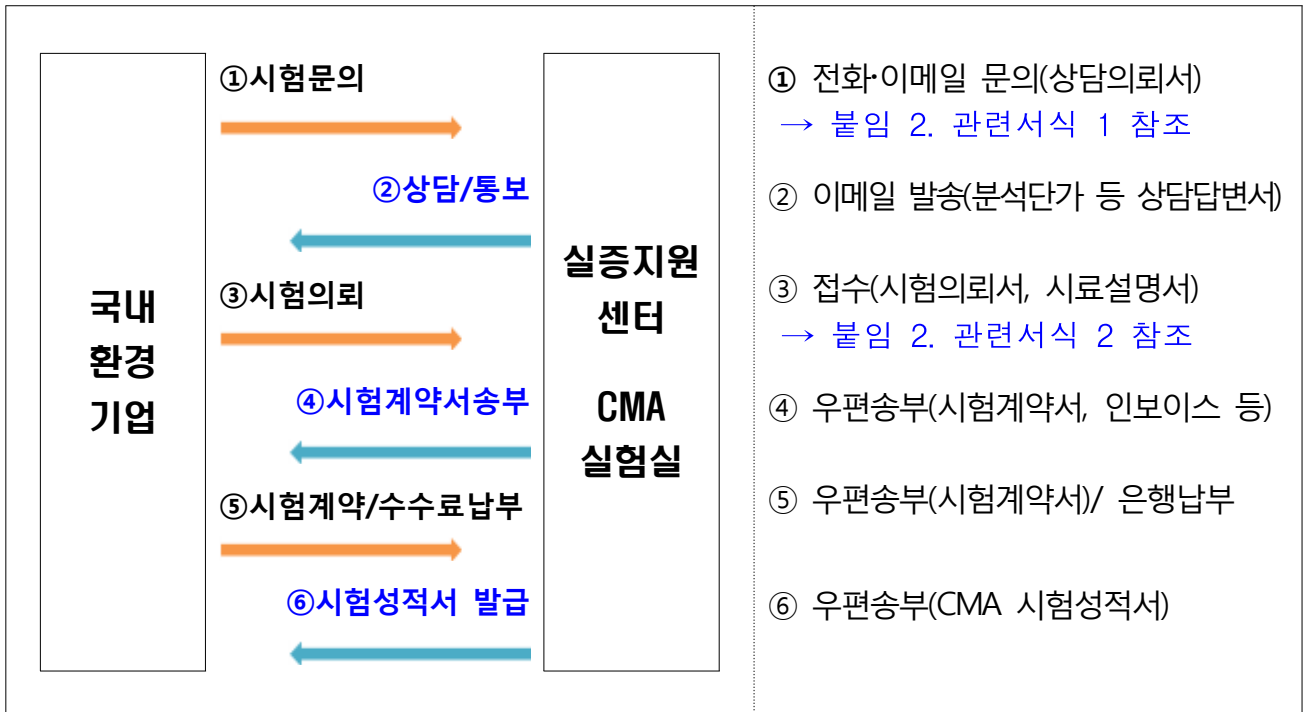
- (분석비용) 분석항목의 평균 수수료는 한국 시험분석기관의 56% 수준

- (분석인증) 기업 요구에 따라 CMA, CNAL, GLP인증 획득 가능

* CMA : 중국계량인증, CNAL : 중국실험실인가(국제표준), GLP : 독성시험 인가

○ (분석의뢰절차)

[시험분석 중국 국가공인 성적서 발급 상세 프로세스]



- ① 환경기업은 시험분석 관련사항(시료, 항목, 단가 등)에 대해 전화·이메일 문의
- ② 실증지원센터에서 시험분석 상담 및 시험분석가능여부, 단가, 기간 등 이메일 통보
- ③ 환경기업은 시험의뢰서 및 시료를 실증지원센터로 송달
*시료에 따라 송달방법·출장시료 채취여부 등 상이, 전화·이메일 사전문의
- ④ CMA실험실에서 분석수수료 산정 및 시험분석계약서 2부(인보이스 등) 우편송부
- ⑤ 환경기업은 시험계약서 1부 우편송부, 분석수수료 은행납부
- ⑥ 실증지원센터 및 CMA실험실에서 시험분석 실시, 분석결과에 대한 시험성적서 우편송부

3. 상담문의

○ 전화·E-mail 문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중 공동 환경기술 실증지원센터
 주 소 : 중국 북경시 조양구 대양방 8호 중국환경과학연구원 1동 북측
 한·중 공동 환경기술 실증지원센터
 中国北京市朝阳区大羊坊8号中国环境科学研究院1号办公楼北侧
 中韩共同环境技术实验室
 문 의 : (북경)+86-10-8491-4200 (서울)+82-2-380-2989 (고광진 센터장, 임보람, 송호양)
 이메일 : jincorea@keiti.re.kr boramst@keiti.re.kr / songhaoyang@keiti.re.kr

붙임 1

공인성적서(CMA인증) 세부 분석항목 및 분석수수료

- **분석항목** : 수질, 토양·고체 폐기물, 생물·화학품 총 5분야 253항목
- **분석수수료** : 평균 분석수수료는 한국의 62% 수준, 실증지원센터 기초분석비용 10% 할인적용 → 최종 한국의 56% 수준으로 산정

○ 수질(총 126항목)

측정항목	측정내용	단가(원) * 환율 180원/위안 기준	한국대비
일반항목 (8항목)	SS, DO, 총인, COD, KMnO4지수, BOD5, 총질소, 암모니아성질소	45,000원/ 항목 270,000원/8개 항목 (시료 10개 이상시)	70%
음이온 (6항목)	인산염, 질산염, 황산염, 불소이온, 염소이온, 브롬이온	54,000원/항목	225%
중금속 (19항목)	구리, 아연, 납, 카드뮴, 크롬, 칼슘, 마그네슘, 코발트, 철, 망간, 니켈, 수은, 바륨, 베릴륨, 바나듐, 은, 알루미늄, 셀레늄, 비소	144,000원/5개 항목 *항목추가시 1항목당 9,000원 소요	120%
휘발성 유기화합물 (32항목)	* 표1 참조	정성분석 : 126,000원/5개 항목 정량분석 : 144,000원/5개 항목 *항목추가시 1항목당 9,000원 소요	36%
반휘발성 유기화합물 (61항목)	* 표1 참조	정성분석 : 144,000원/5개 항목 정량분석 : 180,000원/5개 항목 *항목추가시 1항목당 14,400원 소요	36%

※ 평균수수료는 한국의 59% 수준이며, 실증지원센터 10% 추가할인 적용 → 최종 한국의 53% 수준으로 산정

○ 토양·침전물 및 고체 폐기물(총 115항목)

측정항목	측정내용	단가(원)	한국대비
중금속 (19항목)	구리, 아연, 납, 카드뮴, 크롬, 칼슘, 마그네슘, 코발트, 철, 망간, 니켈, 수은, 바륨, 베릴륨, 바나듐, 은, 알루미늄, 셀레늄, 비소	180,000원/5개 항목 *항목추가시 1항목당 9,000원 소요	120%
휘발성 유기화합물 (32항목)	* 표1 참조	정성분석 : 144,000원/5개 항목 정량분석 : 180,000원/5개 항목 *항목추가시 1항목당 9,000원 소요	35%
반휘발성 유기화합물 (61항목)	* 표1 참조	정성분석 : 162,000원/5개 항목 정량분석 : 216,000원/5개 항목 *항목추가시 1항목당 14,400원 소요	54%
부식성	부식성	90,000원	
침출독성	침출독성	144,000원	
6가 크롬	6가 크롬	90,000원	45%

※ 평균수수료는 한국의 63% 수준이며, 실증지원센터 10% 추가할인 적용 → 최종 한국의 56% 수준으로 산정

< 표1. 휘발성유기화합물 및 반휘발성 유기화합물 목록 >

휘발성유기화합물 (총32항목)	벤젠, 디클로로브로모메탄, 브로모포름, 사염화탄소, 클로로벤젠, 클로로 디브롬메탄, 클로로포름, 디클로로에테인, 다이클로로에텐, 디클로로 프로판, 에틸벤젠, 디클로로메테인,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메틸벤젠, 트리클로로 에테인, 트리클로로에틸렌, 디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 자일렌, 브로모클로로메탄, 브로모벤젠, n-프로페닐벤젠, n-부틸벤젠, 염화메틸벤젠, 다이브로모메탄, 다이브로모에탄, 사염화에탄, 스틸렌, 트리클로로프로판, 트리에틸벤젠, 트리클로로플루오로메탄, 이소프로필톨루엔, 1,2-다이브로모-3-클로로프로판
반휘발성 유기화합물 (총61항목)	아세나프텐, 아세나프틸렌, 안트라센, 벤지딘, 안테라센벤젠, 벤조피렌, 비스(클로로에틸)에테르, 비스-2(에칠헥실)프탈레이트, 브로모페넬페닐에테르, n-Butylphthalide, 클로로나프탈렌, 클로로페놀, 크리센, 벤조안트렌, 디클로로벤젠, 디클로로벤자딘, 디클로로페놀, 2,4-디클로로페놀, 플로오란탄, 벤조나프틸렌, 헥사클로로벤젠, 헥사클로로부타디엔, BHC, DDT, 헥사클로로사이클로펜타디엔, 헥사클로로에탄, PAH, 나프탈렌, 1,2,4-트리클로로벤젠, 2,4,6-트리클로로페놀, 크레졸, 니트로아닐린, N-N'-디-n-프로필에틸렌디아민, 비스(2-클로로이소프로필)에테르, N,N-디메틸프로마이드 디프로필아세탈, p-클로로아닐린, 2-메틸나프탈렌, 디메틸프탈레이트, 2,6-디니트로톨루엔, 디벤조퓨란, 2,4-디메틸-6-니트로페놀, 디아젠, 카라바졸, 프탈산디부틸, 디옥틸프탈레이트, 벤조-g,h,i-페릴렌

○ 생물 및 화학품(생물 11항목, 화학품 2항목)

측정항목	측정내용	단가(원)	한국대비
생물	조류생장억제	5,400,000원	-
	지각류(Cladocera)급성독성	3,600,000원	
	대형지각류 번식	9,000,000원	
	어류 급성독성	5,400,000원	
	어류 14일 연속독성	9,000,000원	
	어류 만성독성	10,800,000원	
	고속 생물분해	5,400,000원	
	지렁이 독성측정	3,600,000원	
	발광세균 독성	3,600,000원	
	미생물 돌연변이 (Ames)	4,500,000원	
	균종 검정	360,000원/주	
화학품	용해도	540,000원	-
	분배계수(옥틸알코올/물)	720,000원	-

※ 평균수수료는 한국의 86% 수준이며, 실증지원센터 10% 추가할인 적용 → 최종 한국의 77% 수준으로 산정


< 수수료 산정 부가설명 >

- 1회 분석의뢰 최소가격 : 180,000원
 - 실증센터 의뢰 및 필요한 인증수량에 따라 수수료 할인 가능
 - (시료 수) 50개 이상시 전체 수수료의 10% 할인, 100개 이상시 전체 수수료의 15% 할인
 - (필요 인증 수) 2개 이상 필요 시 전체 수수료의 10% 추가
 - 위 가격은 시료를 실증센터로 직접 가져왔을 경우 적용 금액이며, 위탁 샘플링은 추가비용 발생할 수 있음
- 예금주) 중국환경과학연구원

붙임 2

시험분석서비스 관련 서류

[서식 1. 시험분석 상담의뢰 및 답변서/ 의뢰기업↔실증지원센터]

 실증지원센터 시험분석 상담의뢰 및 답변서	
<p>1. 문의일자 :</p> <p>2. 기업명 :</p> <p>3. 중국사업내용 :</p> <p>4. 담당자 정보 :</p> <p style="padding-left: 20px;">①이름:</p> <p style="padding-left: 20px;">②전화:</p> <p style="padding-left: 20px;">③이메일:</p>	
<p>문의 내용 (기업)</p>	
<p>답변 내용 (실증센터)</p>	
<p>※ 실증지원센터를 알게 된 계기?</p> <p>① 홍보 이메일 ② 기술원/ 홈페이지 ③ 기타 :</p>	

[서식 2-1. 시험분석의뢰서 / 의뢰기업→실증지원센터]

시험의뢰서 [한글]

* 업무번호 :

의뢰자				
주 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시료발송자			발송일자	
시료접수자			희망분석 완료일자	
분석항목명				
근거 분석표준				
인증종류	<input type="checkbox"/> CNAS <input type="checkbox"/> CMA <input type="checkbox"/> 기타			
시료종류	<input type="checkbox"/> 액체 <input type="checkbox"/> 고체 <input type="checkbox"/> 기타			
시료성질설명	액체시료 : <input type="checkbox"/> 부유물 있음 <input type="checkbox"/> 부유물 없음 <input type="checkbox"/> 유색 <input type="checkbox"/> 무색 고체시료 : <input type="checkbox"/> 수분있음 <input type="checkbox"/> 수분 없음 토양시료 : <input type="checkbox"/> 이물질있음 <input type="checkbox"/> 이물질없음 *			
시료보관방법 (시료송부시)	<input type="checkbox"/> 상온 <input type="checkbox"/> 저온 <input type="checkbox"/> 투입고정시약 종류 :			
시료처리방식 (검사후 샘플처리)	<input type="checkbox"/> 고객에 반송 <input type="checkbox"/> 직접 폐기 <input type="checkbox"/> 위탁 폐기			
시료수량		분석비용		
시료번호				
외주여부	<input type="checkbox"/> 네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외주측 서명	
기술서비스 계약서 계약 여부	<input type="checkbox"/> 네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결재자	

의뢰자(기업) 확인 : (서명) 분석기관 확인 : (서명)

20 년 월 일

测试委托书

* 任务编号:

委托方				
地 址				
邮政编码		联系人		联系电话
送样人			送样日期	
收样人			要求完成日期	
项目名称				
检测标准依据				
测试报告要求	CNAS <input type="checkbox"/> ; CMA <input type="checkbox"/> ; 其它 <input type="checkbox"/> .			
样品类别	水 <input type="checkbox"/> ; 固体 <input type="checkbox"/> ; 其它 <input type="checkbox"/> .			
样品性状描述	水 样：有悬浮物 <input type="checkbox"/> ; 无悬浮物 <input type="checkbox"/> ; 有色 <input type="checkbox"/> ; 无色 <input type="checkbox"/> ; 固体样：有水分 <input type="checkbox"/> ; 无水分 <input type="checkbox"/> ; 土壤样：有异物 <input type="checkbox"/> ; 无异物 <input type="checkbox"/> ;			
样品保存方式 (对送样而言)	常温 <input type="checkbox"/> ; 低温 <input type="checkbox"/> ; 添加固定剂种类：			
样品处置方式 (对检测完样品而言)	返回客户 <input type="checkbox"/> ; 直接废弃 <input type="checkbox"/> ; 危废处置 <input type="checkbox"/> .			
样品数量		测试费用		
样品编号				
是否分包	是 <input type="checkbox"/> ; 否 <input type="checkbox"/> .		分包方签名	
是否签订技术服务 合同书	是 <input type="checkbox"/> ; 否 <input type="checkbox"/> .		审批人	

注：此委托单一式两份，客户凭此委托单取检测报告。

检测方公章：

委托方确认：

检测方确认：

20 年 月 日

[서식 3. 시험분석 서비스 계약서. 참고용(실 계약시 증문계약서 기준 사용)]

계약번호 :

--	--	--	--	--	--	--	--	--	--	--	--	--	--	--	--	--	--	--	--

시험분석 서비스 계약서

업무명 :

위탁자("갑") :

수탁자(을) :

계약시점 :

계약지점 :

유효기간 :

중화인민공화국과학기술부 인쇄

<작성방법>

1. 본 계약은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부가 제작한 기술 서비스 계약 표준문서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각 기술 서비스 등록 기관이 추천 가능한 계약당사자가 참조하여 사용한다.
2. 본 계약서는 한쪽 당사자(수탁자)의 기술지식으로 다른 한쪽 당사자(위탁자)의 특정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결한 계약에 사용된다.
3. 한 계약측이 다양한 당사자로 계약을 체결 시, 각 계약관계의 작용에 따라 '위탁자'와 '수탁자'로 구분하여 공동 위탁자 혹은 공동 수탁자로 분류하여 붙임문서로 첨부할 수 있다.
4. 본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당사자에 의해 첨부문서에 별도 기재하여 약정이 가능하고 계약의 일부로 본다.
5. 당사자가 본 계약서 사용 시 작성이 불필요한 조항에 '없음'이라고 명기할 수 있다.

“갑”이 “을”에게 기술서비스 진행을 위탁함에 있어 그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는 본 계약에 있어 쌍방은 평등한 협상을 통해 진실하고 충분하게 각자의 의견을 제시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의 규정에 의거 본 계약을 체결하고 쌍방은 이를 준수해야한다.

제 1조 “을”이 진행하는 기술서비스의 내용, 요구, 방식

1. 서비스내용

“을”은 _____의 방법에 따라 “갑”에 _____시험분석을 제공한다. 측정지표는 아래와 같다.

- (1)
- (2)
- (3)

2. 서비스 요구 :

3. 기술서비스방식 : “을”은 보유 분석설비를 사용하여 본 계약의 첨부문서의 요구에 따라 금번 시료의 시험분석을 수행하고 서면과 전자문서로 시험분석 보고서를 제공한다.

제 2조 “을”은 아래 기술한 진도계획에 따라 본 계약 항목의 기술서비스 업무를 수행한다.

“을”은 계약 효력발생 이후 10 업무일내 시료접수를 시작하고 시료가 실험실로 도착한 후 _____업무일 내 시험성적서(전자 문서본)을 이메일로 송부한다. “갑”이 시험성적서(전자 문서본)을 확인한 후 1주일 내 “갑”에게 정식 시험성적서(종이문서 출력 후 인장확인)를 발급 완료한다.

제 3조 “을”의 원활한 기술서비스업무 진행보장을 위해 “갑”은 “을”에게 아래의 사항을 협조해야한다.

- 1. 기술자료 제공
- 2. 작업조건 제공
- 3. 기타 :

“갑”이 상기 기술한 협조사항에 대한 시간과 방식 :

제 4조 “갑”이 “을”에게 지불할 기술서비스의 비용과 방식은 다음과 같다.

- 1. 기술서비스 비용의 총액은 _____위안(인민폐)이다.

2. 기술서비스 비용은 “갑”이 “을”에게 지불한다.

“을”의 개설은행 명칭, 주소, 계좌번호는 아래와 같다.

1. 개설은행 : 0000
2. 주 소 : 0000
3. 계좌번호 : 0000

제 5조 쌍방이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 응당 준수해야할 기밀은 아래와 같다.

“갑”

1. 기밀내용(기술정보와 경영정보 포함) : “을”의 실험실과 관련된 정보
2. 기밀 관련 인원의 범위 : 금번 업무에 참여한 직원
3. 기밀준수기간 : “을”의 서면동의 없이 어떤 형식으로도 제 3자에게 “을” 실험실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
4. 기밀누설책임 : 기밀누설로 인해 “을”에게 끼친 모든 손해를 책임진다.

“을”

1. 기밀내용(기술정보와 경영정보 포함) : “갑”과 관련된 기술자료, 본 시험분석 시료 시험분석 결과, 원시 분석데이터, 시험성적보고서 등 관련 자료
2. 기밀 관련 인원의 범위 : 금번 업무에 참여한 직원
3. 기밀준수 : “갑”의 서면동의 없이 금번 시험분석과 관련된 어떠한 자료도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대중에 공개할 수 없다.
4. 기밀누설책임 : 기밀누설로 인해 “갑”에게 끼친 모든 손해를 책임진다.

제 6조 본 계약을 개정하려면 반드시 쌍방의견이 일치해야하고 서면으로 확인한다. 그러나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처해있을 경우 한측은 다른 한측에 계약 권리 및 의무에 대한 개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다른 한측은 7 업무일 이내 회답하여야 한다. 정해진 기일을 넘겨 회답이 없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 “을”이 본 계약기간 이내 본 계약이 규정한 시험분석에 대한 요구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갑”은 계약 변경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2. “갑”이 규정된 기한 내 “을”에게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을”은 계약 변경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3. _____

제 7조 쌍방은 아래 표준과 방식에 따라 “을”이 제공한 기술서비스 업무성과에 대해 검사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1. “을”이 제공한 기술서비스 업무 성과의 형식 :
2. 기술서비스업무 성과의 검사표준 :
3. 기술서비스업무 성과의 검사방법 :
4. 검사시간 및 지점 : “을”의 시험성적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검사하고, 지점은 베이징으로 한다.

제 8조 쌍방은 아래 약정에 대한 각각 위약 책임을 확인한다.

1. “을”이 본 계약의 제 1, 2조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응당 위약 책임을 지며 그 방식과 위약금액은 쌍방 협의로 결정한다. (지불 위약금과 손실배상금액의 계산방법)
2. “갑”이 본 계약의 제 3, 4조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응당 위약 책임을 지며 그 방식과 위약금액은 쌍방 협의로 결정한다. (지불위약금과 손실배상금액의 계산방법)
3. _____측이 본 계약의 제_____조를 위반했을 경우 응당 _____(지불위약금과 손실배상금액의 계산방법)
4. _____측이 본 계약의 제_____조를 위반했을 경우 응당 _____(지불위약금과 손실배상금액의 계산방법)

제 9조 쌍방은 “갑”이 “을”의 본 계약에 부합하는 표준과 방식으로 완성한 기술서비스 성과를 사용하여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손실을 입었을 경우 아래 기술된 1가지 방법으로 처리한다.

1. “을”은 책임지지 않는다.
2. “을”은 부분 책임을 진다. 구체적인 책임방식은 _____
3. “을”은 전부를 책임진다.

제 10조 쌍방은 아래 사항을 확인한다.

1. 본 계약의 유효기간 내, “갑”은 “을”이 제공한 기술서비스 업무 성과로 완성된 신기술 성과를 이용하며 그 소유는 “갑”(“갑”, 쌍방)에 있다.
2. 본 계약의 유효기간 내, “을”은 “갑”이 기술자료와 업무조건 등으로 완성된 신기술 성과를 이용하며 그 소유는 쌍방(“을”, 쌍방)에 있다.

제 11조 쌍방은 본 계약의 유효기간 내, “갑”은 _____를 “갑”의 업무 담당자와 책임자로 지정하며 “을”은 _____를 “을”의 업무담당자와 책임자로 지정한다. 업무 담당자는 아래 사항을 책임진다.

1. 본 업무의 협조, 계획 실현, 조직 실시
2. _____
3. _____

한 측이 업무 담당자를 변경하면 응당 즉시 서면형식으로 다른 한 측에 통지한다. 즉시 통지하지 않아 본 계약이행에 영향을 끼치거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제 12조 쌍방은 아래의 상황이 발생하여 본 계약이행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불가항력 사유 발생
2. _____

제 13조 쌍방은 본 계약 이행으로 인해 쟁의가 발생하면 협의와 조정에 의해 해결해야한다. 협의와 조정이 성사되지 않으면 아래 기술된 1가지 방법으로 처리한다.

1. 북경 중재위원회에 제출하여 중재한다.
2. 법에 의거하여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한다.

제 14조 본 계약 및 관련 문서와 관련된 명사나 기술용어에 대한 정의와 해석은 아래와 같다.

1. _____
2. _____

제 16조 쌍방은 본 계약의 기타 사항에 대해 약정한다.

1. _____
2. _____

제 17조 본 계약은 1가지 양식으로 4통을 작성하고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닌다.

제 18조 본 계약은 쌍방의 날인, 직인 후에 효력이 생긴다.